

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0재나89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1. S

2. T

3. U

4. V

5. W

6. X

7. Y

8. Z

9. AA

10. AB

11. AC

12. AD

13. AE

14. AF

15. AG

16. A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7.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1. 29. 선고 2013가단8642 판결

재심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5368(본소), 2014나7050 (반소)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반소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4, 5, 6, 15, 16,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화장실 및 창고 3㎡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4, 7, 8,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양철스레트건물 17㎡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재심전 항소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6.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86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하여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나5368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 2014나705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9. 피고의 위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1.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 2015다33083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가 대법원에서 2015. 8. 31.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그 판결정본이 2015. 9. 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핀다.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매도증서(을 제4호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 제12호증),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13호증), 공유지분포기서(을 제14호증)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위 각 문서의 위·변조와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이 확정되었다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확정재판을 할 수 없다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자나 처분권한 등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과 그 관련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피고의 반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잘못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99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원판결도 확정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위 특례법 제5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위 상고기각판결이 상고인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5. 5. 11.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하는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위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5. 9. 2. 다음 날부터 30일의 재심제기기간(불변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0. 9.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판단누락을 그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고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부분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상제, 판사 장우영, 판사 진민희